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료 정산 등에 따른 환급금액의 지급계좌 사전신고란을 신설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적용·탈퇴 신고 서식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법률의 규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29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나목 및 다목 중 “1천400시간”을 각각 “1천200시간”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출제기준은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작성해야 하고, 그 적용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9조제11항”을 “영 제29조제12항”으로 한다.

제41조제5항 중 “영 제29조제4항에서 정한 위탁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여야”를 “영 제2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을 “제5항 본문”으로, “상정하여야”를 “상정해야”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같은 기술·기능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에서 등급이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2 직무분야(26)의 기술·기능 분야(51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기능 분야(512)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84	28	118	120	162

별표 2의 직무분야(26)란 중 “16 기계(7/79)”를 “16 기계(7/80)”로 하고, 같은 표의 16 기계(7/80)[중전의 16 기계(7/79)]의 164 조선(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4 조선(7)				동력기계정비				
				선체 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조선		조선					
			조선선체 조선의장					

별표 2의 직무분야(26)란 중 “17 재료(5/38)”를 “17 재료(5/39)”로 하고, 같은 표의 17 재료(5/39)[중전의 17 재료(5/38)]의 174 용접(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4 용접(7)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피복아 크용접				
					가스팅 스텐아 크용접				
					이산화 탄소가 스아크 용접				

별표 2의 직무분야(26)란 중 “19 섬유·의복(2/17)”을 “19 섬유·의복(2/16)”으로 하고, 같은 표의 19 섬유·의복(2/16)[중전의 19 섬유·의복(2/17)]의 192 의복(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2 의복(8)				신발					
					양복				
					양장				
					신발류 제조				
					세탁				
					패션 디자인				
					패션 머친 다이징				
					한복				

별표 2의 직무분야(26)란 중 “22 식품가공(2/11)”을 “22 식품가공(2/13)”으로 하고, 같은 표의 22 식품가공(2/13)[중전의 22 식품가공(2/11)]의 222 제과·제빵(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22 제과·제빵(6)					떡제조				
		제과		제과	제과				
				제빵	제빵				

별표 2의 직무분야(26)란 중 “26 환경·에너지(2/37)”를 “26 환경·에너지(2/36)”로 하고, 같은 표의 26 환경·에너지(2/36)[중전의 26 환경·에너지(2/37)]의 261 환경(2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61 환경(23)	대기 관리								
				대기 환경	대기 환경				
				생물 분류 (동물)					
				생물 분류 (식물)					
	소음 진동			소음 진동	소음 진동				

수질 관리								
		수질 환경	수질 환경					
		자연생 태복원	자연생태 복원					
자연환경 관리								
토양 환경		토양 환경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					
				환경				
		온실가 스관리	온실가스 관리					
		환경위 관리						

별표 7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란 중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스포츠경영관리사”를 “스포츠경영관리사”로 하고, 같은 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란 중 “농림토양평가관리, 유기농업”을 “유기농업”으로 한다.

별표 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란 중 “전자계산기제어 사무자동화”를 “전자계산기제어, 사무자동화”로, “서비스·경험디자인”을 “서비스·경험디자인, 조선, 조선선체, 조선의장,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로 하고, 같은 표 국토교통부 장관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란 중 “컨테이너크레인운전(항만구역 외)”을 “컨테이너크레인운전(항만구역 외), 타워크레인운전”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중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기술자격 종목에 대한 검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동 소관으로 하고, 3D프린터개발”을 “3D프린터개발”로, “컨테이너크레인 운전기능사”를 “컨테이너크레인운전”으로 한다.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021 경영(6)의 사회조사분석사2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회조사분석사2급	필기시험	1. 조사방법과 설계 2. 조사관리와 자료처리 3. 통계분석과 활용
	실기시험	사회조사분석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024 생산관리(7)의 포장기사 및 포장산업기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포장기사	필기시험	1. 포장일반 2. 물류관리 및 유통시험 3. 포장재료 및 시험 4. 포장기법
	실기시험	포장 실무
포장산업기사	필기시험	1. 포장일반 2. 포장재료 및 시험 3. 포장기법
	실기시험	포장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082 디자인(11)의 시각디자인산업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각디자인산업기사	필기시험	1. 시각디자인 조사·분석 2. 시각디자인 기획 구상 3. 시각디자인 제작
	실기시험	시각디자인 제작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01 영업·판매(4)의 텔레마케팅관리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텔레마케팅관리사	필기시험	1. 고객관리 2. 시장환경조사 3. 마케팅관리 4.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
	실기시험	비대면매체 고객관리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41 건축(29)의 건축설비산업기사란,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란, 실내건축기능사란 및 건축목공산업기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설비산업기사	필기시험	1. 건축설비계획 2. 건축설비설계 3. 건축설비 관련법규
	실기시험	건축설비설계 및 시공 실무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필기시험	1. 건축일반시공계획 2. 조적미장시공 3. 타일석공시공
	실기시험	건축일반시공 실무
실내건축기능사	필기시험	실내디자인, 실내환경, 실내건축재료, 건축일반
	실기시험	실내건축 작업
건축목공산업기사	필기시험	1. 건축목공시공계획 2. 목공 구조물 시공 3. 목공 마감 시공
	실기시험	건축목공시공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44 도시·교통(5)의 교통산업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통산업기사	필기시험	1. 교통운영 2. 교통계획 3. 교통안전 4. 교통시설
	실기시험	교통운영 및 관리

별표 8의 직무분야(26)란 중 “16 기계(7/79)”를 “16 기계(7/80)”로 하고, 같은 표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61 기계제작(14)의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란, 정밀측정산업기사란 및 정밀측정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필기시험	1. 도면 해독 및 측정 2. CAM 프로그래밍 3. 컴퓨터수치제어(CNC) 절삭가공
	실기시험	CNC 가공 실무
정밀측정산업기사	필기시험	1. 정밀측정 2. 도면해독 3. 정밀가공 4. 재료시험
	실기시험	정밀측정 실무
정밀측정기능사	필기시험	정밀측정, 도면해독, 기계가공
	실기시험	정밀측정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62 기계장비설비·설치(31)의 전자부품장착(SMT)산업기사란 및 건설기계정비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전자부품장착(SMT)산업기사	필기시험	1. SMT 공학 2. 솔더링 공학 3. 공기압
	실기시험	SMD 장비 프로그램 작성 및 SMT 실무
건설기계정비기능사	필기시험	건설기계 점검 및 정비, 안전관리
	실기시험	건설기계 기본정비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64 조선(6)”을 “164 조선(7)”으로 하고, 같은 표의 164 조선(7)[중전의 164 조선(6)]의 조선기사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의 164 조선(7)[중전의 164 조선(6)]의 조선기술사란 다음에 조선선체기사란 및 조선의장기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선선체기사	필기시험	1. 선박기본설계 2. 선형설계 및 계산 3. 선체구조 설계 4. 선체해석
	실기시험	선체설계 실무
조선의장기사	필기시험	1. 선박기본설계 2. 철의장 설계 3. 기장 및 선박배관설계 4. 선실 및 전장설계
	실기시험	선박의장 설계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67 금형·공작기계(7)의 프레스금형산업기사란, 사출금형산업기사란 및 금형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프레스금형산업기사	필기시험	1. 프레스금형설계 2. 프레스금형제작 3. 프레스금형측정 및 재료
	실기시험	프레스금형 실무
사출금형산업기사	필기시험	1. 사출금형설계 2. 사출금형제작 3. 사출금형측정 및 재료
	실기시험	사출금형 실무
금형기능사	필기시험	금형 설계 및 제작
	실기시험	금형제작 실무

별표 8의 직무분야(26)란 중 “17 재료(5/38)”을 “17 재료(5/39)”로 하고, 같은 표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71 금속·재료(17)의 압연기능사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74 용접(6)”을 “174 용접(7)”으로 하고, 같은 표의 174 용접(7)[중전의 174 용접(6)]의 용접기능사란 및 특수용접기능사란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의 174 용접(7)[중전의 174 용접(6)]의 용접산업기사란 다음에 피복아크용접기능사란,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란 및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피복아크용접기능사	필기시험	피복아크용접, 용접안전, 용접재료, 도면해독, 가스절단, 기타용접
	실기시험	피복아크용접 실무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필기시험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용접안전, 용접재료, 도면해독, 가스절단, 기타용접
	실기시험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실무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필기시험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용접안전, 용접재료, 도면해독, 가스절단, 기타용접
	실기시험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실무
압연기능사	필기시험	열간압연, 냉간압연, 금속제도, 금속재료
	실기시험	압연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82 위험물(3)의 위험물기능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험물기능장	필기시험	화재이론, 위험물의 제조소 등의 위험물 안전관리 및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실기시험	위험물취급 실무

별표 8의 직무분야(26)란 중 “19 섬유·의복(2/17)”을 “19 섬유·의복(2/16)”으로 하고, 같은 표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91 섬유(8)의 의류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류기사	필기시험	1. 패션소재 2. 패션상품생산기획 3. 의류패턴제작 4. 의류생산공정관리 5. 의류품질관리
	실기시험	의류 설계 및 제작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92 의복(9)”을 “192 의복(8)”으로 하고, 같은 표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92 의복(8)[중전의 192 의복(9)]의 한복산업기사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92 의복(8)[중전의 192 의복(9)]의 신발류제조기능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발류제조기능사	필기시험	신발류제조공정, 신발류디자인, 신발류봉제, 신발류검사
	실기시험	신발류제작 작업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212 방송·무선(6)의 무선설비기사란, 무선설비산업기사란 및 무선설비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무선설비기사	필기시험	1. 디지털전자회로 2. 무선통신기기 3. 안테나 엔지니어링 4. 무선통신시스템 운용 5. 컴퓨터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실기시험	무선설비 실무
무선설비산업기사	필기시험	1. 디지털전자회로 2. 무선통신시스템 3. 안테나 엔지니어링 4. 컴퓨터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실기시험	무선설비 실무
무선설비기능사	필기시험	전기전자개론, 컴퓨터일반, 무선통신일반, 무선설비기준
	실기시험	무선설비 작업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213 통신(10)의 전파전자통신기사란,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란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전파전자통신기사	필기시험	1. 디지털전자회로 2. 무선통신시스템 3. 안테나시스템 운용 4. 해상통신 운용 5. 전파 관계 법규
	실기시험	해상통신 실무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필기시험	1. 디지털전자회로 2. 무선통신시스템 운용 3. 해상통신 운용 4. 전파 관계 법규
	실기시험	해상통신 실무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시험	무선통신일반, 해상통신 운용, 전파 관계 법규
	실기시험	해상통신 실무

별표 8의 직무분야(26)란 중 “22 식품가공(2/11)”을 “22 식품가공(2/13)”으로 하고, 같은 표의 중직무분야(61)란 중 “222 제과·제빵(4)”을 “222 제과·제빵(6)”으로 하며, 같은 표의 중직무분야(61)란 중 222 제과·제빵(6)[중전의 222 제과·제빵(4)]의 제과기능장란 다음에 제과산업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의 중직무분야(61)란 중 222 제과·제빵(6)[중전의 222 제과·제빵(4)]의 제과기능사란 다음에 제빵산업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과산업기사	필기시험	1. 위생안전관리 2. 제과점관리 3. 제과류 제품제조
	실기시험	과자류 제조 실무

제빵산업기사	필기시험	1. 위생안전관리 2. 제과점관리 3. 빵류 제품제조
	실기시험	빵류 제조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232 목재·가구·공예(14)의 귀금속가공산업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귀금속가공산업기사	필기시험	1. 귀금속 디자인 2. 귀금속 및 보석 재료 3. 귀금속 가공 4. 귀금속 구조
	실기시험	귀금속가공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241 농업(14)의 종자산업기사란 및 시설원예기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종자산업기사	필기시험	1. 종자생산과 법규 2. 육종 3. 재배 4. 작물보호
	실기시험	종자생산 실무

시설원예기사	필기시험	1. 원예학개론 2. 시설원예학 3. 재배학원론 4. 작물생리학 5. 수경재배학
	실기시험	시설원예 실무

별표 8의 직무분야(26)란 중 “26 환경·에너지(2/37)”를 “26 환경·에너지(2/36)”로 하고, 같은 표의 중직무분야(61)란 중 “261 환경(24)”을 “261 환경(23)”으로 하며, 같은 표의 중직무분야(61)란 중 261 환경(23)[중전의 261 환경(24)]의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중직무분야(61)란 중 262 에너지·기상(13)의 에너지관리산업기사란 및 에너지관리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시험	1. 열 및 연소설비 2. 열설비설치 3. 열설비운전 4. 열설비안전관리 및 검사기준
	실기시험	열설비취급 실무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시험	열설비 설치, 운전 및 관리
	실기시험	열설비취급 실무

별표 9 제1호의 중직무분야 중 141 건축란, 142 토목란 및 143 조경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의 중직무분야 중 144 도시·교통란 다음에 145 건설 배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1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축,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실내건축, 방수	
142 토목		토목, 건설재료 시험, 응용지질, 지적,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건설재료 시험,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해양조사	건설재료 시험, 콘크리트
143 조경		조경	조경	

145 건설 배관	배관		배관	
-----------	----	--	----	--

별표 9 제1호의 중직무분야 중 164 조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4 조선		조선선체, 조선의장	조선	
--------	--	------------	----	--

별표 9 제1호의 중직무분야 중 171 금속·재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1 금속·재료	금속재료, 압연, 제강, 제선	금속재료	금속재료, 재료 조직평가	금속재료 시험, 제강, 제선, 압연
-----------	------------------	------	---------------	---------------------

별표 9 제1호의 중직무분야 중 191 섬유란을 삭제한다.

별표 9 제1호의 중직무분야 중 202 전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2 전자	전자기기	광학, 의공, 전자계산기, 임베디드, 로봇기구개발	광학기기, 의공, 3D프린터 개발, 전자계산기 제어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	------	-----------------------------	------------------------------	-------------

별표 9 제1호의 중직무분야 중 221 식품란 다음에 222 제과·제빵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2 제과·제빵	제과			
-----------	----	--	--	--

별표 9 제1호의 중직무분야 중 241 농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41 농업		시설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유기농업, 종자	유기농업, 종자
--------	--	----------------------	----------	----------

별표 9 제1호의 중직무분야 중 251 안전관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51 안전관리	가스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농작업안전보건, 방재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	가스
----------	----	---	---	----

별표 9 제1호의 중직무분야 261 환경란 및 262 에너지·기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61 환경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환경위해관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262 에너지·기상	에너지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별표 11의4 컨벤션기획사 1급의 응시자격란 제1호 중 “별표 3”을 “별표 11의2”로 한다.

별표 14의 육군의 종합군수학교의 용접/기계공작병의 면제 종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별표 14 중 해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행정학교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기능사	초급반 및 중급반 모두 이수 시 면제
	전기공사	전기기능사	
	보수 초급·중급	피복아크용접기능사	
	한식조리	한식조리기능사	
	추기초급반	공조냉동기계기능사	
해난구조대	잠수	잠수기능사	
6전단 609	항공기체/기관 초급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체/기관 중급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전자 초급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전자 중급	항공전자정비기능사	

별표 14의 공군의 군수 1학교의 항공기제작 부서관 초급의 면제 종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피복아크용접기능사

별표 15 중 시험감독위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험감독위원	필기시험 및 실기 시험(주관식 필기 시험 형태로 한정한다)	시험실 당 1명 이상
	작업형 실기시험	종목별 시험실 당 2명 이상

별표 18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공익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다. 그 밖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16조제1항 제2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1년
3.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 3호	자격취소

별표 19 중 직무분야의 자격종목(269종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격종목(271종목)

별표 19의 중직무분야 중 164 조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4 조선	조선기술사·산업기사,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동력기계정비기능사, 선체건조기능사
--------	--

별표 19의 중직무분야 중 174 용접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4 용접	용접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	--

별표 20 제1호의 중직무분야 중 142 토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2 토목	토목, 잠수
--------	--------

별표 20 제1호의 중직무분야 중 202 전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2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광학기기
--------	-------------------

별표 20 제2호의 중직무분야 중 174 용접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4 용접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2쪽·3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가.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포장기사, 포장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교통산업기사,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신발류제조기능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에너지관리기능사, 향로표지기사, 향로표지산업기사, 열처리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가. 별표 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제과산업기사 및 제빵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및 그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철도토목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3.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조선기사,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한복산업기사 및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나.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조선선체, 조선의장 및 농림토양평가관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관련된 개정규정

다.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조선기사,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한복산업기사,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사회조사분석사2급, 시각디자인산업기사, 텔레마케팅관리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정밀측정기능사, 건설기계정비기능사, 프레스금형산업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금형기능사, 압연기능사, 의류기사, 귀금속가공산업기사, 종자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및 에너지관리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라.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조선기사,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및 의류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마. 별표 14의 개정규정 중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및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면제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바. 별표 19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조선기사,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및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과 관련된 개정규정

사. 별표 20의 개정규정 중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및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제2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또는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시험감독위원 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이후 실시되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 용접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피복아크용접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5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분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선기사 또는 특수용접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조선기사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특수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제6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또는 한복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또는 한복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또는 한복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7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행위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선(기술사 등급만 해당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선(기사 및 산업기사 등급만 해당한다),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및 전산응용조선제도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운전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위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수신자 고용노동부장관(직업능력평가과장)
(경유)

제 목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 등 검토의견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검토 부서명	신청기관	
검토 종목	신설	
	변경	
	폐지	
	그 밖의 종목(등급 개편, 직무분야 변경 등)	

검토항목(구체적으로 작성-별지 작성 가능)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필요성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 표준과 연계한 해당 자격종목의 직무 내용·범위 및 난이도	
해당 자격 취득자의 수요 및 전망	
해당 분야 종사인원 및 인력양성 실태	
검정 응시인원의 적정성 및 시행 가능성	
해당 자격종목이 산업현장에 적합한 정도	
유사 자격의 존속 여부 및 운영실태	
국가기술자격 운영분야 해당 여부	
국가 외 검정 금지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정업무 위탁 가능 기관	
그 밖의 사항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합격 확인신청서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확인사항	시험구분	수험번호
	종목	
	최종 응시 연월일	

위와 같이 제 회 필기(실기)시험 또는 외부평가(년 월 일 시행)에 합격하였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합격 확인서

시험구분			
성명	생년월일		
종목			
수험번호			

년 제 회 국가기술자격의 필기(실기)시험 또는 외부평가(년 월 일 시행)에 합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수탁기관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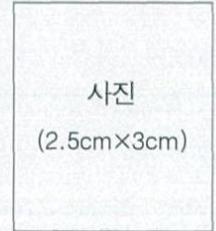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국가기술자격증

자격번호 :
자격종목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합격 연월일 : 년 월 일
발급 연월일 :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본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이 확인·발급함.

수탁기관 장 직인

76mm×115mm(보존용지(1종) 120g/㎡)

(3쪽)

CERTIFICATE

NO.

class :

Name :

Date of Birth :

Date of Issue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as a Radio Operator of the class indicated above.

It also verifies that this certificate corresponds to the Operator's Certificate provided in the Radio Regulations in complement with the Constitution and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On behalf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of the Republic of Korea

head of entrusted institution



76mm×115mm(보존용지(1종) 120g/㎡)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제과산업기사 등 2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한복산업기사 등 2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의류기사 등 57개 자격 종목에 대한 시험과목 및 실기시험 방법 등을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75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그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text{보증금액} = \frac{\text{도급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월)}} \times 4$$

-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text{보증금액} = \frac{\text{도급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월)}} \times \frac{\text{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text{(월수)}} \times 2$$

-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34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를 “다른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이후 이에 대응하여 건설기계